



심층 탐험 5

자격은 있으나 등록이 불가능한 의장

1. 공업상 이용이 불가능한 의장

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의장은 의장 등록을 할 수 없다.

- (1)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은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동일 물품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- (2) 공업적 생산 방법은 기계적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.
- (3) 동일 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뜻 보아서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을 의미한다.
- (4)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의장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자연물을 의장의 구성 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대량 생산할 수 없는 것
 - ② 순수 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

2. 공지(公知)·공용(公用) 의장

의장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, 공용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.

의장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세상이 다 알도록 실시된 의장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의장 등록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된 의장은 공지 의장으로 본다. 다만 의장이 공지된 날과 출원일이 같은 때로서 시, 분, 초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 그 의장의 공지를 이유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.
- (2) 등록 의장은 그 설정 등록일부터 공지 의장으로 본다.
- (3) 의장 등록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의장은 세상이 다 알도록 실시된 의장으로 본다.

3. 등록될 수 없는 의장

- (1) 국기, 국장, 군기, 훈장, 포장, 기장, 기타 공공 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, 국장, 또는 국제 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
- (2)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
 - ① 국가 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
 - ② 특정 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
 - ③ 저속, 혐오스러운 것, 기타 사회 정의와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것
 - ④ 인류에 반하는 것
- (3)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
 - ① 타인의 저명한 상표, 서비스표, 단체 표장 및 업무 표장을 의장으로 표현한 것 (일체 상표의 경우를 포함한다)
 - ② 비영리 법인의 표장을 의장으로 표현한 것

4. 타인의 의장과 유사한 의장은 등록할 수 없다

의장의 유사 판단은 이렇게 한다.

- (1)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끼리 의장의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형태 \ 물품	동일 물품	유사 물품	비유사 물품
형상·모양·색채 (동일)	동일 의장		
형상·모양·색채 (유사)		유사 의장	
형상·모양·색채 (비유사)			비유사 의장

- ①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.
- ② 유사 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.
 - (예) 볼펜과 만년필
- ③ 원래 비유사 물품이지만 두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용도상으로도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 물품으로 취급한다.
 - (예) 수저통과 연필통

(2)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기준

- ①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은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 과정에서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 의장으로 본다.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의장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의장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 의장으로 본다.
- ② 유사 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 판단한다.
- ③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 관찰해야 하며 확대경, 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해선 안 된다.
- ④ ‘전체적으로 판단한다’ 함은 의장의 요부 판단과 그 비교만으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장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면 비유사 의장으로,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한 의장으로 판단한다.
- (3) 형상, 모양 및 색채에 따른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의장으로 보되, 형상이나 모양이 의장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 전체로서 판단한다.
 - ② 모양의 유사 여부는 주제(Motif)의 표현 방식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.
 - ③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 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.
- (4) 참신한 의장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은 좁게 본다.
 - ①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
 - a.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의장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
(예) 직물, 칼, 식기 등
 - b.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
(예) 젓가락, 편지지 등
 - c. 구조적으로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
(예) 자전거, 쌍안경, 운동화 등
 - d.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것
(예) 신사복, 한복 등
 - ②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
 - a. 새로운 물품

- b. 같은 종류의 물품에서 현재보다 특히 새로운 부분
- c. 특이한 형상에 첨가되는 모양

- (5) 물품이 잘 보이는 면에 유사 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.
 - ① 텔레비전, 에어컨 등은 6면 중 정면에 비중을 둔다.
 - ② 전화기 등은 6면 중 정면에는 비중을 적게 둔다.
- (6)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.
 - ① 수저일 경우 손잡이 부분의 형상, 모양에 비중을 두고 판단한다.
 - (7) 물품의 크고 작은 차이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유사로 판단한다.
 - (8)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참작한다.
 - (9) 기능, 구조, 정밀도, 내구력, 제조 방법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.
 - (10) 동적(動的)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동적 의장과 정적 의장
동적 의장의 정지 상태와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세가 정적 의장과 유사하면 유사한 의장으로 본다.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않은 의장으로 본다.
 - ② 동적 의장 상호간
동적 의장 상호간은 그 정지 상태, 동작의 내용 및 동작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세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.
 - (11) 완성품(부품의 종합체)과 부품의 유사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 물품으로 본다. 다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 유사 물품으로 본다.
 - ② 완성품과 부품이 선·후 출원 관계에 있는 경우 두 물품은 비유사 물품으로 거절 이유가 되지 않는다.
 - ③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다.
 - ④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은 그 완성품에 의하여 공지된 의장으로 본다.
 - 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 앞의 ① 및 ②에 상관없이 두 물품은 유사 물품으로 보아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.
(예) 사진틀과 사진틀테
손목시계와 손목시계테(본체)
 - (12) 형틀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(예) 빵틀과 빵 등

(13) 합성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합성물이란 여러 개의 구성물로 이루어지고 그 구성물이 개성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

(예) 장기쪽, 트럼프, 화투,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

② 합성물의 의장은 그 구성 조각이 모인 전체를 하나의 의장으로 모아 대비 판단한다.

③ 조립 완구처럼 구성 조각 하나가 의장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성물과 그 구성 조각의 유사 여부 판단은 위 (11) 항(완성품과 부품의 유사 여부 판단)에 준하여 판단한다.

5. 창작이 용이한 의장은 등록 불가

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,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(이하 주지의 형상, 모양 등이라 한다)으로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 가능한 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. 다만, 주지의 형상, 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취사 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(1) 용이 창작의 판단 기준

① 주지의 형상, 모양 등이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을 만큼 간행물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, 모양 등을 말한다.

②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 함은 동 업계(그 의장을 표현하는 물품을 생산,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)에서 그 의장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.

③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주지의 형상, 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추가된 변화가 상업적 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
상업적 변화란 동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보탬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예로 들 수 있다.

(예) 공지의 사각형 천장판 측면에 경사면을 표시한 정도의 것
주지의 타원형을 뚜껑과 몸체로 분리하여 과자 용기를 만드는 것
주지의 형상, 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모든 물품에 적용한다.

(2) 용이 창작의 유형

① 주지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 창작
a. 평면적 형상의 예



b. 입체적 형상의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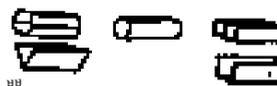
(i) 기둥



(ii) 봉



(iii) 홈



(iv) 뿔



(v) 뿔대



(vi) 뿔대통



(vii) 정다면체 (正多面體)



(viii) 기타



- c.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의 예: 비행기, 자동차,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
 - (i) 혼한 모양의 예: 봉황 무늬, 거북등 무늬, 바둑판 무늬, 물방울 무늬 등
 - (ii) 색채: 색채가 모양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 요소로 하고 단일색으로 칠하여진 것은 창작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② 자연물, 유명한 저작물, 유명한 건조물,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
 - a. 자연물: 새, 물고기, 소, 대나무잎, 꽃잎, 소나무, 나무결, 돌, 바위 등 자연물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특이한 것은 주지가 아니다.
(예) 꽃잎, 곤충의 발 등 자연물의 일부를 특이한 각도에서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본 확대 사진 등
 - b. 저작물: 김홍도의 풍속도, 만화 주인공 뽀빠이 등 널리 알려진 그림, 조각, 만화, 영화 등
 - c. 건조물: 남대문, 남산타워, 자유의 여신상, 에펠탑, 불국사, 올림픽 주경기장 등 널리 알려진 건조물
 - d. 경치: 백두산 천지, 금강산, 한라산 백록담, 후지산, 나이에가라 폭포 등 유명한 풍경
 - e. 운동 경기 또는 각종 행사 장면: 삼일절 행사 장면, 올림픽 경기 개최 장면, 축구 경기, 배구 경기 등 각종 경기의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
건조물이나 경치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특징이 있도록 표현되어 있으면 주지가 아니다.
- (3) 주지 의장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.
 - ① 해당 업계에서 간행물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의장을 주지 의장으로 본다.
 - ② 주지 의장에 의한 용이 창작의 유형
 - a. 종류가 다른 물품 간에 의장의 전용이 그 업계의 관행인 경우
(예)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의장을 완구나 장치물에 전용하는 사례
 - b. 물고기, 닭다리, 밤, 호도 등 다른 음식물의 의장을 과자류에 전용하는 사례
 - ③ 다른 물품 간에서 물품의 용도, 기능,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의장의 전용이 해당 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
 - a. ET 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
 - b. 탁상용 시계의 형상 모양을 라디오에 전용

- ④ 두 가지 이상의 주지 의장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물품의 의장을 이루는 경우
 - a. 주지의 라디오 형상·모양과 주지의 시계·형상 모양이 결합된 것
 - b. 주지의 책상 형상에 주지의 책꽂이 형상을 부착하여 이루어진 책꽂이가 부착된 책상
 - c. 주지의 의자 방식의 형상·모양과 주지의 의자 등받이의 형상·모양이 결합된 것으로 이루어진 등받이가 붙은 의자 방식. 단, 물품의 용도, 기능,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의장의 결합이 해당 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용이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.